

의안 번호	2563	[울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]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. 3. 20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3. 2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4. 2.(목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예산실장 민병률)

### 가. 제안이유

- 유사·중복되는 시책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한정된 인력과 재원에 대한 ‘선택과 집중’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새로운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일몰의 결정 및 권고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일몰의 대상 시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의견청취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
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주)

### 가. 검토사항

#### 1) 제정배경

- 유사·중복되는 시책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한정된 인력과 재원에 대한 ‘선택과 집중’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새로운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.

#### 2) 내용검토

##### 가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- 조례의 목적 명시
- 시책 등, 일몰에 대한 용어 정의

##### 나) 적용범위(안 제3조)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모든 행정기관의 시책에 적용함을 규정
- 시책 등, 일몰에 대한 용어 정의

##### 다) 일몰의 결정 및 권고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- 매년 정기적으로 일몰 여부 결정 및 의회의 일몰 권고에 관하여 규정

##### 라) 일몰 대상 시책(안 제6조)

○ 일몰의 대상 시책 명시

-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
-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
-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
-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
- 우수시책으로 구정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
-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

마)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- 시책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‘울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’ 설치 근거 규정
- ‘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’ 에서 대행함을 명시

바)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(안 제8조)

- 경미한 시책은 실·국·소장이 경정 처리 후 시책일몰제 담당 부서 제출

사) 의견 청취 등과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(안 제9조, 제10조)

- 외부전문가 회의 참석토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근거 마련
-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,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명시
- 일몰 결정 시책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공개

## 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유사·중복되는 시책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한정된 인력과 재원에 대한 ‘선택과 집중’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새로운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본칙 제 10개의 조로 구성되었으며,
  - 안 제1조,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,
  -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‘「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에 따른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.’라고 하였으며,
  - 안 제4조, 제5조에서는 시책 등에 대한 매년 정기적으로 일몰 여부 결정 및 의회의 일몰 권고에 관하여 규정하고,
  - 안 제6조에서는 일몰 대상 시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7조에서는 시책일몰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음.
  - 안 제9조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
  -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이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이 미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,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은 기간을 정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며 일몰이 결정된 시책은 구 누리집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환경의 변화에도 답습적으로 추진해 오던 비효율적인 시책 등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·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-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### 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 근 거 법 규

##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